

제266회(정례회) 제3차본회의
2007년 12월 21일 (금)
심 사 보 고 서

O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

> 충 청 북 도 의 회
> 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07년 12월 4일
충청북도교육감
나. 회 부 일 자: 2007년 12월 4일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○ 2007. 12. 17 제266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 • 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ㅍ. 제안설명 요지 <br> (제안설명 : 이장길 기획관리국장)

가. 제안이유
시•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산정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○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072명에서

41명이 감원된 3,031명으로 함(안 제2조)

-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- 본청,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3,059명 $\Rightarrow 3,018$ 명(감 41명)


## III. 검토보고 요지

## (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)

○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규정이 개정(07.11.20)됨에 따라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직(4급)에서 지방직(3급)으로 전환됨.
○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의 규정에 의거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매 2 년마다 산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음,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(07.11.14)의 표준정원 고시에 의하면, 충북교육청이 3,031 명으로 종전보다 41 명이 감 축된 것으로, 이는 단위학교별 식품위생직(영양서) 공무원이 영 양교사로 전환됨에 따라 감축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 다고 사료됨.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V. 토론요지 : "생략"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O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| 197 |
| :--- | :--- |
| 번 호 | 197 |

제출연월일 : 2007. 12. 4.<br>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 제안이유

시•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 신과-2127, 2007.11.14)이 재산정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 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072 명에서 41 명이 감원된 3,031 명으로 함(안 제 2 조)
(1)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(2) 본청,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3,059 명 $\Rightarrow 3,018$ 명(감 41 명)

## 참그자료

가. 관계법령 발췌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다.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: 해당 없음
라.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 1 항제 3 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#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"3,072명"을 " 3,031 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중 "3,059명"을 "3,018명"으로 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•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:---: | :---: |
| 제2조(정원의 총수)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,072 명 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br> 1. (생 략) <br>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 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3,059 명 | 제2조(정원의 총수) $\qquad$ $\qquad$ $\qquad$ <br> 1. (현행과 같음) <br> 2. $\qquad$ $\qquad$ 3,018명 $\qquad$ |

## 관계 법령 발 췌서

## $\square$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 (개정 2004.1.29 대통령령 제8247호)제14조(표준정원의 책정) (1)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 원(이하 "표준정원"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(2)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 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.
(3)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
(4)지방자치단체의 폐치•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 - 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•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•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 이 유사한 다른 시•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

제 19 조(정원의 규정) (1)시•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라 당해 시•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(2)직급별 정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 13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 -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$\square$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

 (개정 2004.1.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)제3조 (표준정원의 산정) (1)영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•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 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(2)교육감은 매년 6월 30 일과 12 월 31 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 관별•직급별•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(3)영 제 14 조제 2 항에서 "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 한 정원"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 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(이 하 "보정정원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(4)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 정정원을 매 2 년마다 8 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(5)제 1 항 및 제 3 항의 뀨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.
[별표 1]<개정 2004.1.30>

## 시•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(제3조제1항관련)

## 1. 특별시 - 광역시

헌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$+(5.793702 \times$ 학교수 증감분 $\times 0.6+0.1919011 \times$ 학급 수 증감분 $\times 0.4) \times 1.15+70.9 \times 2$ 국 6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$+57 \times$ 아 지역교육 청 증감분 $+40.3 \times 2$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
2. 도

헌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$+(5.022132 \times$ 학교수 증감분 $\times 0.6+0.3594281 \times$ 학급 수 증감분 $\times 0.4) \times 1.15+61.6 \times 2$ 국 6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$+51.5 \times$ 와 지역교 육청 증감분 $+31.6 \times 2$ 과 지역교육청 증감분

비 고

1.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

가. 특별시 - 광역시
[현 정 원 $+\{1.720094 \times$ (학 급순학 교수) 의 자연로 그 갮 $\times$ 학 교수 $168.1659 \times 2$ 국 6 과지역교육청수 $+177.8311 \times 4$ 과 지역교육청수 $105.4566 \times 2$ 과 지역교육청수 +161.7123$] \div 2$
나. 도
[현정원 $+\{1.910288 \times$ (학급수 $\div$ 학교수)의 자연로그값 $\} \times$ 학교수 +
$123.1787 \times 2$ 국 6 과 지역교육청수 $+49.33297 \times$ ( 2 과 지역교육청수 +
4과 지역교육청수) +225.1432$] \div 2$
2. 학교수•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는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의 월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3. 학교수•학급수 및 지역교육청 증감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, 해당연도의 4월 1 일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.
$\square$ 시•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127, 2007.11.14)

| 구 분 | 표준정원 | 보정정원 | 비 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충청북도교육청 | 3,031 | 3,121 |  |

